의안번호	2209356
의 뢰 인	이만희 의원
회 답 일	2025. 4. 9.
추계번호	25F18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 한도 인상 –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등을 함에 따라 증여세는 2026년 654억원, 2028년 654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962억원(연평균 6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은 영농 증여 감면세액 5년간 합계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

○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28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71조제1항)	−654	−654	−654	−1,962	−654
영농 증여 감면세액 5년간 합계액 1억원에서 5억원 인상(안 제133조제4항)	추	정	곤	란	
합 계	−654	−654	−654	−1,962	−654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2	안 제133조제4항(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영농 증여 감면세액 5년간 합계액 인상(증여세감면한도액) – 증여세감면한도액: (현행) 1억원 → (개정안) 5억원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2	안 제133조제4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건수 및 가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추계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3년간 발생할 것으로 가정

❑ 향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증여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65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이외에도 개정안은 영농 증여 감면세액 5년간 합계액 인상(1억원 → 5억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동 추계에서 제외함

○ 향후 영농 증여의 증여세감면한도액(5년간 증여세 합) 인상(1억원 → 5억원)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 5년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건수 및 가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100%)

[표 2] 영농자녀등의 증여세 감면 요건

구분	내용
증여인 요건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에 거주 •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
수증인 요건	•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
감면대상 자산	• 농지: 「농지법」 상 농지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 상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것,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이 산림지의 경우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따른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상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 상 어선으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 어업용 토지 등: 4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누적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적용기간: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실적은 2019년 596억원에서 2023년 654억원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표 3] 최근 5년간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액
감면실적	596	536	773	712	654	65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 각 년도

나. 추계방법 및 결과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654억원, 2028년 654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962억원(연평균 6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최근 5년(2019~2023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65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4] 향후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증여세 감소액	654	654	654	1,962	654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